



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

다음과 같이 상기 사업의 공모를 실시합니다.

2010년 5월 3일

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

1. 사업 개요

▣ 정의

- 대학,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사업성 테스트, 상품화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해 R&B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

▣ 목표

- 공공지원 및 민간투자가 부족한 기초/원천기술의 ‘상품화 기술개발 단계’에 R&BD 지원을 집중하여 다음 단계인 ‘창업-제품 사업화’를 촉진함

▣ 주요내용

- 사업신청 자격 : 컨소시엄 형태
 - 사업성이 높은 특허기술 보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
 - 기업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
- 보유기술 조건
 - 대학, 연구기관, 기업이 단독 보유 또는 공동 보유한 출원특허 및 등록특허(실용신안 포함)
 - ※ 단, 보유기술의 특허권리자는 개인소유가 아닌 참여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업 등) 법인소유에 한함

○ 사업신청서 작성

- 주관기관이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(특허기술 상품화 기술개발에 필수)과 함께 작성
 - ※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등의 컨소시엄이 사전 구성되어야 함
- 보유 특허기술의 설명(우수성 및 권리성), 상품화 개요, 해당 분야의 시장성, 상품화 개발 시 사업성 등을 기재

○ 1단계 선정평가

- 사업신청서 상의 ‘시장성’, ‘사업성’, ‘기술성’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최종지원대상 과제의 2배수를 우선 선정함

○ 사업계획서 작성(사업화 기획)

- 1단계 선정평가를 통과한 컨소시엄은 2단계 선정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1개월 동안 작성
- 컨소시엄이 상호 협력하여 상품화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, 사업성 테스트 등에 대한 전반적 사업화 기획을 수행하여 종합적인 상품화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
- 사업화 기획을 위한 별도의 **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은 없음**
 - ※ 보유기술이 출원기술인 경우에는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써 **선행 기술조사보고서**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

○ 2단계 선정평가

- 1단계 선정평가를 통과한 컨소시엄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‘사업성’, ‘경영능력’, ‘기술성’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40개 내외의 과제를 최종 선정

○ **협약체결 및 사업수행**(과제당 2억원 이내/년, 2년간 지원)

- 상품화 기술개발 및 상품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
- 특허기술의 사업화 테스트
- 개발목표 상품의 시장조사
- 시작품-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등

■ 기대효과

- 유망한 특허기술의 상품화 기술개발로 R&BD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서울시의 기술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함
- 사업화 진전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증대 등이 포함된 서울경제 활성화에 노력

2. 지원분야

연번	지원 분야	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(대분류)
1	기계/재료	H 기계 / I 재료
2	보건/생명	G 보건의료 / E 생명과학
3	에너지/환경	M 에너지자원 / O 환경
4	전기전자	K 전기전자
5	정보통신	L 정보통신

※ 지원 분야별 최종선정대상 과제수는 공모결과 접수율, 서울시 정책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

3. 지원범위

▣ 지원자격

○ 주관기관

- 본교 또는 본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(분사무소 포함)
- 서울에 소재한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,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
- 기타 서울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 기관

○ 협력기관

-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
- 서울시에 본교(분교)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(분교)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(분사무소 포함)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, 국공립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서울시 출연기관

- 종합병원,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,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
-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·시설 등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 기관

○ 참여기업

-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(이하 ‘참여기업’이라 한다)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이어야 하며, 다음의 각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결격사항 : 창업한 지 1년 미만, 화의·부도·법정관리 중인 경우, 참여기업 대표의 신용거래불량이 확인된 경우, 완전자본잠식 또는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

○ 위탁기관

- 당해 과제의 임상, 기술이전, 특허, 컨설팅, 회계 등의 지원 기능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
○ 과제책임자

-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서울소재 대학의 전임교수(정년보장 트랙)로 하며, 소속 학부(학과)의 캠퍼스가 서울시에 소재하여야 함
-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상기된 서울소재 주관기관(연구기관)에 소속된 전임연구원

○ 부문책임자

-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과제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교수를 포함하여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(정년보장 트랙), 전임연구원, 참여기업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

※ 지원 제한 공통사항

-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 지원할 수 없음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협력기관, 참여기업,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제재조치(참여제한) 대상일 경우 지원할 수 없음
- 현재 기존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는 2010년도에 공모하는 동 사업의 과제책임자 자격이 없음. 단,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가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책임자 자격이 있음

- 2010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세부 사업별(특허기술 상품화 지원사업, 중소기업 제품개선 지원사업,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)로 동일 과제책임자의 사업계획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**최종적으로 1개의 과제만** 선정지원대상이 됨
- ※ 상기 참여기관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('10.4.30개정) 및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('10.5.3개정) 참조

4. 지원내용

▣ 지원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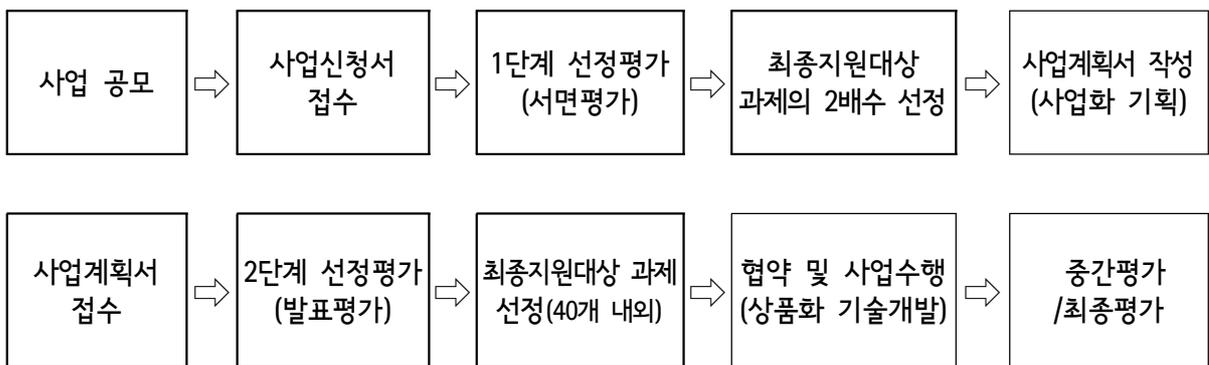
-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**총 2년 이내**를 원칙으로 함
- 기 구축된 산업기반(각종 연구센터, 시설장비 등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S/W적 지원에 역점을 두며, H/W적 지원은 가급적 지양함
- 서울시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**75%까지** 지원하며 민간부담금(민간부담현금 및 민간부담현물)출자는 총 사업비의 **25%이상**으로 함
- 민간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을 포괄하여야 하며, 참여기관의 민간부담현금은 **시지원금의 5% 이상**으로 함
- 본 사업은 **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**하여야 하며, 참여기업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하여야 함. 또한 예상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활용의사와 실시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, 사업종료 전후에 주관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**정액기술료**를 납부해야 함
- ※ 참여(실시)기업의 규모에 따라 (대기업 **20%**, 중소기업 **10%**, 대·중소기업 혼재 **15%**) 기술요율 적용
- 과제 중복성 검토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활용 및 평가위원회 검토) 결과, 기 지원된 **중복과제와 참여제한 제재조치**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- 우수과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과제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최종 선정된 과제의 경우 사업수행 중 **중간평가 결과 하위 10% 이내의 과제를 중단 조치하여 상위**에 속하는 과제에 **인센티브로 시지원금을 상향** 지원할 수 있음

■ 지원규모

- 지원금액
 - 과제당 연간 시지원금 2억 원 이내 (총 사업기간 : 2년 이내)
- 서울시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급하며, 총 사업기간 중간시점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

5. 추진절차 및 일정

■ 추진절차



■ 추진일정

- 공모 및 접수 : 2010년 5월 3일(월) ~ 6월 4일(금)
- 1단계 선정평가(최종지원대상 과제의 2배수 선정) : 2010년 6월 말(예정)
- 사업계획서 작성(사업화 기획) : 2010년 7월 중(1개월 동안 시행)
- 2단계 선정평가(최종지원대상 과제 선정) : 2010년 8월 중(예정)
-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 : 2010년 9월 중(예정)
 - ※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6. 선정평가

▣ 평가방법

- 선정평가는 1단계 평가(서면평가)와 2단계 평가(발표평가)로 나누어 진행되며, 1단계 평가에서 최종지원대상 과제수의 2배수를 우선 선정함
 - 1단계 선정평가 주안점 : 시장성, 사업성, 기술성 등
 - ※ 1단계 평가는 사업신청서를 기반으로 어떤 보유기술을, 어떤 시장조건에서, 어떻게 사업화하려는지 전체적인 사업구상과 이에 관련된 참신한 아이টে임을 발굴하는 차원임
 - 2단계 선정평가 주안점 : 사업성, 경영능력, 기술성 등
 - ※ 2단계 선정평가는 사업화 기획 기간(1개월) 동안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실제적인 사업화 수행능력 및 추진계획 등을 평가함
- 주관기관 등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신청서 내용에 중대한 결격사유(허위사실 기재 포함)가 발견될 경우,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- 각 단계별 평가결과 종합평점(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점수)이 **70점 미만**인 과제는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함

▣ 단계별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

- 1단계 선정평가(사업신청서 서면평가)

구 분	평 가 항 목	배점
시장성 (40)	최종목표 상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	15
	관련 시장 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	15
	서울지역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	10
사업성 (40)	사업화 내용 및 범위의 명확성	10
	사업화 대상기술의 상용화 가능성	15
	최종상품의 매출발생 가능성	15
기술성 (20)	사업화 대상기술의 권리성 및 우수성	10
	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업 등)의 역량	10

○ 2단계 선정평가(사업계획서 발표평가)

구 분	평 가 항 목	배점
사업성 (40)	사업화 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	10
	사업화 내용 및 범위의 명확성	10
	사업화 대상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및 고용창출 등 산업·경제적 파급효과	10
	최종 제품의 매출발생 가능성	10
경영능력 (40)	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업화 역량(사업화 경험 등)	10
	참여기업의 경영현황(재무현황, 생산능력 등)	10
	제품 마케팅 및 판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(참여기업의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등)	10
	참여인력 및 사업비 구성·배분의 적절성	10
기술성 (20)	사업화 대상기술의 권리성 및 안정성	10
	주관기관 등 참여기관의 기술개발능력 및 전문성	10

▣ 우대조건

-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과제인 경우, 여타 선정조건이 동일할 시 필요에 따라 우대(동점과제 중 해당과제에 우선순위 부여)할 수 있음
 - 참여기업이 「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」의 회원으로 등록된 과제
 - 서울시산학협력사업(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)의 **최종평가 성공과제**
 - 수입대체 효과 또는 수출가능 사업화 기술 중심의 과제

7. 사업공모 및 접수

▣ 공모 및 접수기간 : 2010. 5. 3(월)~6. 4(금) 16:00까지

- 2010. 6. 3(목) 18:00 까지 인터넷 접수를 사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
 - 서울시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ssms.mbd.re.kr>)에서 과제책임자 명의로 로그인하여 사업신청서 접수
- 2010. 6. 4(금) 16:00까지 우편방문 접수 완료(소인 여부 관계없이 도착기준)
 - 6. 3(목)까지 사전에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과제만 접수 가능함

■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

○ 사업신청서 양식

-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seoul.mbd.re.kr>)의 '사업별 공고'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
○ 제출서류

-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
- 인터넷 접수확인증 1부(인터넷 접수 시 발급)
- 사업신청서 6부(원본 1부 포함, 전자파일은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)
- 각종 첨부서류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본

○ 파일명

- 한글파일 이름은 '10특허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.hwp'로 함
예) 10특허_한국대_김서울.hwp/ 10특허_과기연구원_이사랑.hwp

○ 접수처

- <137-071>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
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평가관리3팀 「특허기술 사업」 담당자 앞

8. 기타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사업신청서 작성 시 권고사항

- 별첨서류를 제외한 사업신청서 총 분량은 가급적 15페이지 이내 작성을 권고함
- 핵심적인 내용만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명료하게 정리하여야 함

○ 본 사업과 관련하여 '2010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계획', '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', '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규정', '특허기술상품화 기술 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' 등의 자료를 참조

- 사업신청서 서식 관련자료 다운로드 및 인터넷(on-line) 접수 안내는 서울 시정 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seoul.mbd.re.kr>)의 '사업별 공고'의 내용 참조

-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요망
- 전화 문의(평가관리3팀) : (02) 2149-1425, 1414, 1236
- 온라인 문의 :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&A 코너 이용